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65호)

2025. 2.

교육안전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제4465호

나. 발 의 자 : 박란희 의원 외 12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1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1월 31일

마. 상정일자 : 2025년 2월 10일

바. 의결일자 : 2025년 2월 10일

-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사. 의결결과 : 원안가결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2)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자 함.

나.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

-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 의무 부여

다. (안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명시

라. (안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의무 부여

-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율, 실적,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여

마. (안 제7조)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생산품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구매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바. (안 제8조)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생산품의 홍보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종류, 구매 인식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안 제9조)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의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우선구매 실적이 많은 개인 및 기관 등에 포상 근거 마련

3. 검토의견

가. 최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모든 공공기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정 의무비율인 1.1%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24.8.7.)」 일부발췌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 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0호)」 일부발취」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나.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근 2년동안 법정 의무 비율인 1.1% 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1] 세종시교육청 2020~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해당연도		2020	2021	2022	2023
생산품 구매실적 (억)	전체구매액(1)	1,343	1,413	1,528	1,942
	우선구매액(2)	27	24	15	21
구매비율(%)		2.03	1.75	0.99	1.08
목표달성 여부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 출처: 보건복지부(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

※ 전체구매액(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기관 전체 물품 구매액

※ 우선구매액(2): 중증장애인생산품 기관 구매액

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라. 이들의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마. 또한, 안 제9조에서 우선구매 실적이 많은 대상기관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장려하도록 한 것은 좋은 취지로 보임

바.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을 추진하고, 포상의 심사 자료인 구매 실적을 집계하려면 교육감이 대상기관에게 실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IV. 토 론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 없음

VIII. 기타사항 : 없음

【참고자료】

붙임 1. 제정조례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문 의 처
044)300-75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 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박관희